

대한상의 브리프

KPMG삼정회계법인 전략컨설팅본부
심종선 공인회계사



제119호 2020년 3월 30일

편집자주 최근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 각국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수입규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요국의 최근 수입규제 경향과 시사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 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41 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수입규제란, 수입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재 화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조치를 의미한 다. 흔히 덤핑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일컫는다.

우리 나라는 현재 27개국으로부터 총 205건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각국의 수입규제 활용 동향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인도 이다.

최근 4년간과 과거 20년간 수입규제 조사 건수를 비 교해보면,

반덤핑 조치 분야에서는 인도와 미국이 1, 2위를 차 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반덤핑 활용이 높아졌다는 것 이 최근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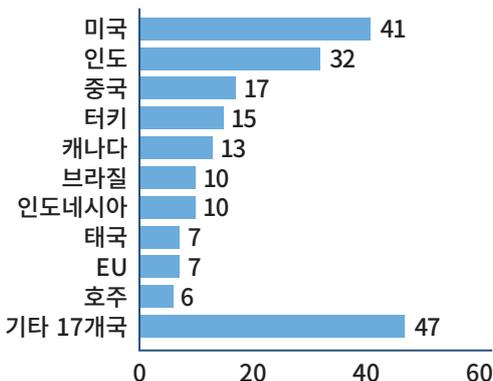
상계관세 부문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의 조치가 증가 추세다.

세이프가드 부문에서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이 사용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도 활용 하는 추세다.

최근 또 다른 특징은 수입규제 관세율이 과거 5~10% 수준이었으나, 규제 강화로 50~100% 정도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2015 년 무역특혜연장법을 통해 특정시장상황(PMS)이나 불리한 가용정보(AFA)로 덤핑마진을 높게 계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왔다.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출처 : 외교부, '20. 2. 29 기준

[주요국의 수입규제 변화]

(단위 : 건)

순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과거 20년	최근 4년	과거 20년	최근 4년	과거 20년	최근 4년
1	인도 740	인도 179	미국 156	미국 87	인도 39	칠레 5
2	미국 526	미국 168	EU 74	캐나다 20	인니 26	터키 5
3	EU 468	중국 56	캐나다 49	호주 13	터키 20	인도 4
4	브라질 369	호주 55	호주 18	인도 11	요르단 17	베트남 4
5	아르헨 315	아르헨 53	남아공 13	EU 7	칠레 15	인니 3
6	호주 289	브라질 48	브라질 등 10	중국, 대만 5	필리핀 등 11	말련 3

* 출처 : WTO 자료 저자 재구성(조사개시 기준), 과거 20년('95~'14), 최근 4년('15~'18)



[미국의 반덤핑 관련 주요 규정]

-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정국의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보아 당국의 재량으로 덤핑마진을 산정
- **AFA(Adverse Facts Available)**
피소업체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아 불리한 가용정보로 덤핑마진 산정

이러한 최근 조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규제의 경향을 살펴보고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① 신개발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최근 대표적 경향 중 하나는 경쟁력 있는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술 추격을 위해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화 솔루션은 파이프용 PVC를 고급화한 CPVC를 1990년대 중반부터 자체 개발해 2015년 12월에 공정기술을 모두 독자화했다. 2017년부터 인도에 수출을 시작했는데, 2019년 반덤핑 조사로 수출길이 제동이 걸렸다. 신제품 출시 후 최소 5년 이상 기술 격차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보통인데, 기술 개발 후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수입규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 동 사건은 지난 2월 최종판정이 내려져 약 40% 가량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신기술 개발 노력과 동시에 타깃 시장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②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 확대

최근 인도의 스테인리스 반덤핑 조사대상 범위는 그 간 있어왔던 조사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인도기업이 기존에 규제 중이던 제품과 국가에 더하여 규제하지 않았던 모든 제품군과 국가를 신규 조사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2010년부터 규제하고 있는 냉연스테인리스 반덤핑조치에서는 600mm 미만 제품을 규제하지 않았었는데, 2019년 개시한 반덤핑조사에서는 이를 포함시켰다. 또, 2015년부터 규제 중인 열연스테인리스의 경우 1,650mm 이하이면서 304 Grade인 제품만을 규제했는데, 2019년 조사대상에는 그 외 모든 열연 제품을 포함시켰다. 더욱이 기존에 규제중인 중국, 한국, EU 등 이외의 국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업들은 반덤핑 조사시 같은 품목군에서 조사대상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인도 스테인리스 반덤핑 조사 범위]

품목	600mm 이상 냉연강판	1650mm 이하 304Grade 열연강판	두 규제에서 제외된 품목
국가	10.2.20부터 부과	15.6.5부터 부과	2020년 예정
중국	규제 중	규제 중	2019 조사대상
한국			
EU			
미국			
일본	2019 조사대상	규제 중	
싱가폴			
베트남			
말련			

③ 새로운 수입규제 방식 확대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산지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다. 직접수출 외에도 제3국에서의 가공을 통한 재수출, 수입국 현지나 FTA 등을 체결한 근접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러한 수출패턴 변화에 따라 수입규제 당국도 수입 규제 위반 여부를 촘촘히 재점검하고 있다. 보통 기업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신규 수입규제 조사나 우회 조사 외에 새롭게 회피(Evasion) 조사나 일반원산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수입규제 위반 조사

갑자기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고 있다면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될 위험이 있다. 조사 후 예비판정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관세가 부과되는데,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뒤 시점이다.

우회수출 조사(Anti-Circumvention)

일부 중국기업이 우회수출 통로로 한국을 이용하기도 한다. 중국제품이 한국기업을 통해 우회수출하고 있다고 결정되면, 조사개시일로부터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율 역시 중국의 경우인 비시장경제국 방식으로 계산해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거짓신고에 대한 회피(Evasion) 조사

더 위협적인 조사는 미국이 2016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vasion 조사가 있다.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수출시 거짓신고하는 경우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개시된다.

조사 결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반덤핑관세율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조사 신고일로부터 과거 1년까지 소급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우회 조사 관세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최근 활용도가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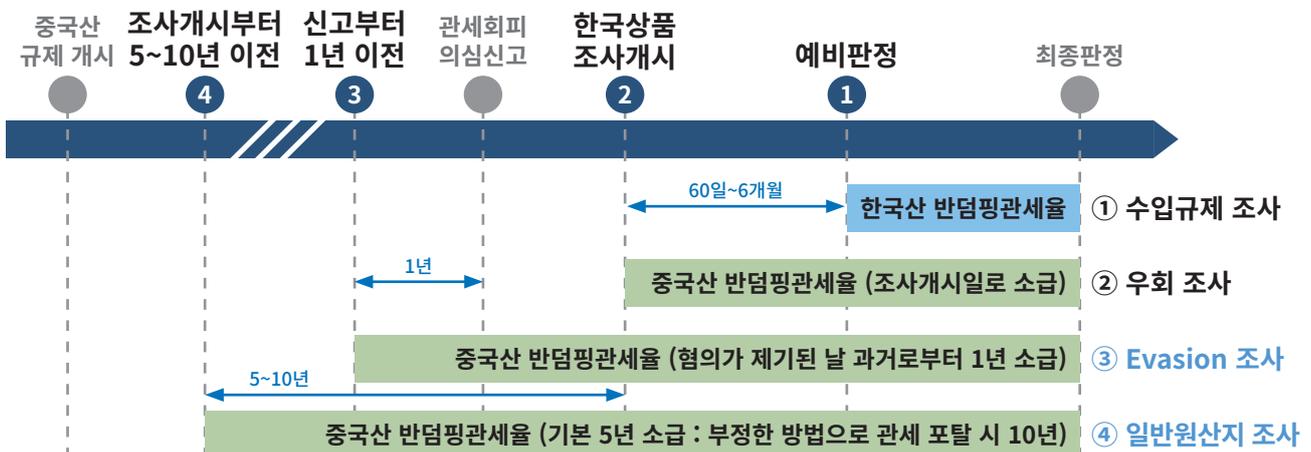
일반원산지 위반 조사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반덤핑·상계관세를 결정하는 일반원산지 위반 조사다. 원산지를 잘못 신고하여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결정되면 조사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을 소급해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례로 2018년 중국 전기모터 생산업체가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따른 25% 추가관세를 회피하고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 수출하여 단순 조립한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였다. 美 정부는 이를 일반원산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고, 중국에 대한 25%관세를 부과한 날로 소급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였다.

각 기업은 수출입신고나 일반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관세청의 사전 확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입규제 조사별 적용 관세율 및 기간(중국산 반덤핑관세율 비교시)]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④ 중소기업 대상 조사 확대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2019년에 개시된 반덤핑 조사 중 미국이 제재한 건축용스테인플철심, 단조피팅, PET시트와 인도가 제재한 디지털오프셋인쇄판 제품 등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대기업보다는 훨씬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 등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대응하지만, 중소기업은 조사와 동시에 시장을 포기해버리기 일쑤다. 대부분 조사 대응 비용이 현지 수출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반덤핑관세는 ▲수출기업의 덤핑 ▲수입국 내 생산자 피해가 동시에 입증되어야 부과할 수 있는데, 덤핑 조사와 달리 피해 조사는 중소기업들의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입규제 대상 중소기업 제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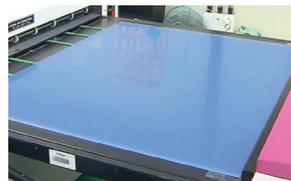
건축용스테인플철심
(Collated Steel Staples)



페트시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단조피팅
(Carbon and alloy Forged Steel Fittings)



디지털오프셋인쇄판
(Digital Offset Printing Plate)

* 출처 : SENCO, Alibaba.com, news.kbs.co.kr

⑤ 수입규제를 M&A 전략으로 활용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 Kyocera그룹은 2017년 경영 부실을 겪고 있는 건축용스테인플철심 생산업체인 미국 Senco사를 인수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경쟁사들이 소재한 한국, 중국, 대만에 대한 반덤핑 조사('19.6월)를 선택했다. 반덤핑 조사는 정보 취합, 제소 전략 등 준비기간에만 1년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으로, 이 기간 동안 경쟁사 사업을 위축시키고, 경영정상화 시간을 벌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사가 다른 기업에 인수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M&A 소식이 곧 수입규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



[M&A 성공을 위한 수입규제 패턴]



기업 인수 ▶ 수입규제 제소 ▶ 시장점유율 극대화

* 출처 : Kyocera, SENCO

기업의 선제적 준비 필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수입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다. 수입규제 국가들로부터 낮은 관세율 판정을 얻어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과거에는 상상도 못한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은 신제품개발 단계부터 진출시장 수입규제 조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수입규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수출입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원산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들도 공동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보호무역 주의의 파고를 현명하게 넘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요 수입규제별 대응방안]

수입규제	대응방안
① 신개발 제품 규제	신제품개발, 시장진출 단계부터 대응전략 수립
② 조사 범위 확대	비규제품목이라 하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③ 새로운 규제수입	수출입 프로세스 재점검,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 등
④ 중소기업 조사 확대	시작부터 포기해서는 안돼, 공동대응 모색해야
⑤ M&A 전략으로 활용	경쟁업체 등 업계 동향 파악 등 대비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3월 30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E)	IMF		OECD	
			2020 ^(P)	2021 ^(P)	2020 ^(P)	2021 ^(P)
한국	2.7	2.0	2.2	-	2.0	2.3
세계	3.6	2.9	3.3	3.4	2.4	3.3
미국	2.9	2.3	2.0	1.7	1.9	2.1
중국	6.6	6.1	6.0	5.8	4.9	6.4
일본	0.8	1.0	0.7	0.5	0.2	0.7
EU	1.9	1.2	1.3	1.4	0.8	1.2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184	1,167	1,176	1,164	1,194
원/엔(100엔)	1,009	996	996	1,094	1,073	1,077	1,065	1,085
원/위안	167.5	166.4	166.4	166.9	166.3	167.6	168.0	170
원/유로	1,276	1,299	1,299	1,309	1,291	1,306	1,294	1,302
유가(Dubai)	53.2	69.7	63.5	59.4	62.0	64.9	64.3	54.2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19.10월	11월	12월	'20.1월	2월
산업생산	2.6	1.6	0.6	0.1	1.6	3.9	-0.5	-
소매판매	1.9	4.3	2.4	1.9	3.7	4.5	1.8	-
설비투자	14.4	-3.6	-6.2	-1.6	1.1	11.2	-3.8	-
수출	15.8	5.4	-10.4	-15.0	-14.5	-5.3	-6.3	4.5
수입	17.8	11.9	-6.0	-14.6	-13.0	-0.8	-5.4	1.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